

2021년 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

□ 개 요

- 감사기관 : 전라북도 감사관실
- 감사기간 : 2021.7.8., 7.14~7.26(10일)
- 감사내용 : 인사, 예산, 회계, 연구사업 추진실태 등 운영전반('17.11.1.~'21.6.30.)
- 감사결과 : 주요지적 사항 11건

□ 주요지적 사항 (11건)

제목	주요지적 내용	처리결과	비고
기본·기획과제 추진 미흡 및 연간 연구계획서 작성 소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전북연구원의 기본·기획과제(31건) 비중은 6.9%로 전국평균 13.0%(64.5건)보다 절반 가까이 낮게 나타났고, 강원연구원을 제외한 7개 시도 연구원 중 기본·기획과제 추진 비율이 가장 낮음 ◦ 연구원 설립목적에 맞게 전라북도 중·장기 발전 방향 제시를 위한 기본·기획과제를 확대·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「연구사업 수행규칙」에 연구과제 수행계획서 작성 및 심의 절차 이행 등 연구업무 철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매년 부서별 과제발굴 워크숍(11~12월)을 통해 기본·기획과제 발굴 강화 및 중장기 과제 선정 ◦ 「연구사업 수행규칙」에 따라 연구수행계획서 작성 및 심의 절차 이행(9월 이후 19건 심의) 	완료
연구윤리위원회 운영 및 연구윤리 검증 관리 미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연구윤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, 연구과제의 객관적인 유사율 검증체계 구축 등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고 「연구윤리규칙」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연구윤리업무 철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연구윤리규칙 내용 정비 및 정기적으로 연구윤리위원회를 개최하도록 규칙 개정('21.11.02.) ◦ 연구윤리시스템 운영 계획을 정비하여 검증절차 보완('21.11.02.) 	완료
연구사업 수행절차 미준수·부적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연구책임자는 원장에게 최종보고를 거쳐 연구과제를 종료한 뒤 2주일 이내에 원장의 결재를 받아 최종보고서를 발간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원장의 결재 없이 최종보고서를 발간한 사례가 있었으며, 연구과제 종료 후 30일 이상 지연하여 최종보고서를 발간하였음 ◦ 「연구사업 수행규칙」에 따라 연구과제 수행 절차 이행 등 연구업무 철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원활한 연구수행 절차 준수를 위하여 최종연구심의회 개최 시기 조정('21.10.08.) ◦ 최종보고서 제출 및 발간 지연 사유서 제출에 대한 절차 준수를 유도하기 위하여 미이행 시 페널티 적용 및 직원교육('21.10.08.) 	완료

제목	주요지적 내용	처리결과	비고
연구자료 관리업무 추진 부적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소장 자료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자료 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, 총 20권(구입금액 538천원)은 현재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데도 관련자 변상 조치 소홀 ◦ 「자료 및 간행물 관리규칙」에 따라 “자료 및 간행물관리위원회”를 구성·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원회 미운영 ◦ 연구원 「자료 및 간행물 관리규칙」에 따라 분실(훼손)된 연구자료(20권)에 대해 관련자로 하여금 변상 등 적절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「자료 및 간행물 관리규칙」에 따라 연구자료 관리업무 철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소장자료 전수조사를 통해 감사기간 동안 분실로 파악된 도서 20권을 모두 회수하여 도서관으로 이관('21.11.04.) ◦ 장서 목록 현행화 및 ‘자료 및 간행물관리위원회’를 주기적으로 개최 예정 	완료
신규자 경력 확정 기준 불합리 및 인사원칙 사전공개 소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연구원이 정한 “일반경력환산표 업무유형 I, II, III ”에서 명시한 채용분야의 업무와의 동일성 및 유사성 기준은 다른 시·도 연구원의 신규임용직원 초임연봉 확정을 위해 규정한 “경력환산기준표”와 비교할 때 구체적이지 않음 (구체적인 경력환산기준표 필요) ◦ 연구원은 직원 승진 인사를 실시하면서 「지방 출자·출연기관 인사·조직 지침」에 따라 직원들에게 인사 사전예고를 공지하여야 하나 이를 실시하지 않음 ◦ 현행 연구원 「보수규정」 제6조 <별표 2> “신규임용자 일반경력 인정기준”에 대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개정하고 「지방 출자·출연기관 인사·조직지침」 등에 따라 인사운영 기본계획 등을 사전에 공개하는 등 인사업무 철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신규임용자 일반경력 인정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 중으로(시도연구원 참고)이사회 의결을 거쳐 보수규정 개정 예정('21.12.월중) ◦ 승진 인사 실시 전 인사 사전예고에 철저를 기하겠음 	추진중
징계대상자 포상감경 제한기준 마련 미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「지방공무원 징계규칙」에 명시되어 있는 징계 처분 시 포상(표창) 감경 제외 공적에 대한 기준(단서조항)이 명확하게 제정되어 있지 않아 징계대상자가 과거 여러 차례 포상(표창)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각 건별로 포상(표창) 감경을 적용할 여지가 있음 (중복 포상 감경 제한 기준 필요) ◦ 「지방공무원 징계규칙」을 참고하여 징계대상자의 포상 감경 제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인사업무 철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명시된 바와 같이 내규 개정('21.10.26.) 	완료

제목	주요지적 내용	처리결과	비고
대외활동 신고 등 소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대외활동 등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32명 691건의 경우 사전신고를 하지 않고 대외활동 및 외부강의 등의 종료 후 1일부터 96일까지 신고 지연 ◦ 외부강의 등은 사례금을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미리 알 수 없어 변경이 있을 때는 사례금 수령 후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데도 1명 1건의 경우 신고하지 않음 ◦ 현행 「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고 있는 외부강의 등의 신고 기한을 「직원대외활동규칙」 등에 반영하고 「직원대외활동규칙」 등에 따라 임직원의 대외활동 등에 대한 지도·감독 철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「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고 있는 외부 강의 등 신고 기한과 같이 연구원 「직원대외활동규칙」 개정('21.10.26.) ◦ 대외활동 사전신고 절차 및 제한, 위반 시 조치 등에 대해 지침마련 및 직원교육('21.10.26.) 	완료
원규 시행 및 관리 부적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세척 또는 예규를 시행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하는데 5개 지침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원장 승인 후 시행 ◦ 제정·시행한 세척은 번호를 붙여 원규대장에 비치하고, 원규집에 수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13개의 세척에 대하여 원규대장의 번호를 부여하지 않았으며, 원규집에 수록하지 않음 ◦ 「원규관리규정」에 따라 세척 등을 제정·시행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는 등 원규 관리업무 철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제정·시행한 세척은 번호를 붙여 원규대장에 비치하고, 원규집에 수록('21.10.27.) ◦ 세척 등을 제정·시행할 때에는 심의 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겠음(9월 이후 1건 심의) 	완료
출장여비 지급 부적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연구과제 현장조사를 위하여 출장하면서 관용차량을 이용하였는데도 별도의 운임을 지급하였으며, 일비도 50%를 감액하지 않고 100% 모두 지급하여 149천원의 출장여비를 과다 지급 ◦ 대외활동으로 사례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출장여비를 지급할 수 없는데도 중복하여 90천원을 과다 지급 ◦ 연구원 「여비지급규정」 등과 달리 부적정하게 지급된 여비 239천원을 회수하고 「여비지급규정」 등에 따라 여비 지급 업무 철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과지급된 출장여비 149천원과 대외활동과 중복된 출장여비 90천원, 총 239천원 회수('21.10.13.) ◦ 여비 등이 중복지급이 되지 않도록 과제관리시스템(PMS) 기능 개선 	완료

제목	주요지적 내용	처리결과	비고
공용차량 관리 부적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지 않아 920천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하지 못함 ◦ PMS(Project Managemnet System) 기능상 시내 외 출장신청(복명)시 차량 사용 신청사항과 운행사항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사유로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하지 않음 (PMS상 승인 매뉴얼 미탑재) ◦ 「차량관리규칙」 등에 따라 공용차량 관리업무 철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주유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“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” 발급·사용(‘21.8.23.) ◦ 차량신청 및 운영대장에 결재(‘21.09.01.) 	완료
개인정보취급자 교육실시 소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현황을 살펴본 결과, 2019년도에 정보화시스템 운영 직원 2명에 대해서만 1회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었고, 인사, 회계 등 소속 직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지 않음 ◦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교육을 실시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관리·감독 철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2021년 대상자 전원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(8명, ‘21.08.30.) ◦ 아울러 전 직원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의식 고양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홍보 활동 실시 예정 	완료